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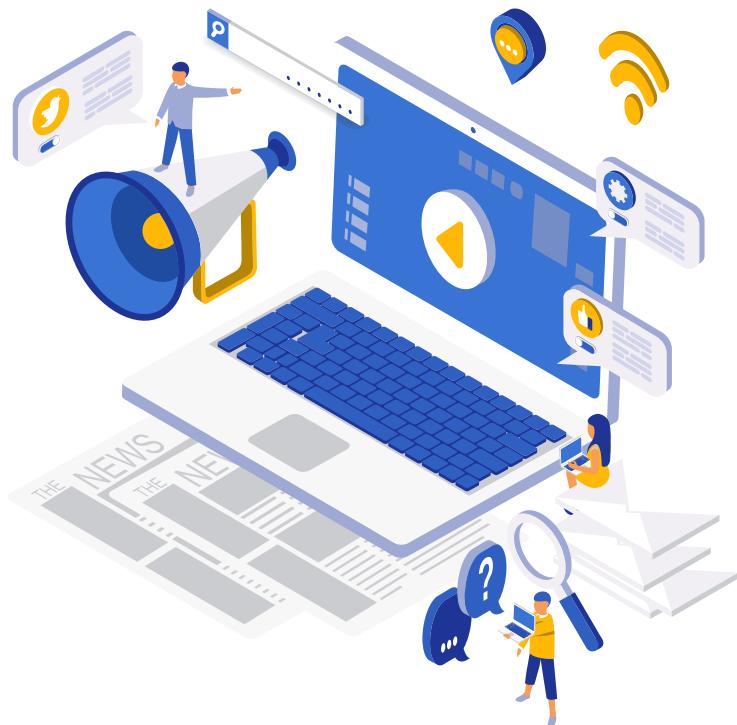
2020. 06.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2020. 06.





본 안내서는 식품 등 광고 업무 관계자들이 부당한 광고 내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여 식품 등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광고 판단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참고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유권해석 및 부당한 광고 판단은 사회여건 및 식품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편의 도모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함.

CONTENTS

I 개요

01 배경 및 목적	08
1 배경	
2 목적	
02 관련 법령 및 용어 정의	09
1 관련 법령	
2 용어 정의	
03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및 현황	10
1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2 부당한 광고 현황	

II 부당한 광고

01 광고 기준	12
02 부당한 광고 행위 금지 대상	13
03 부당한 광고 행위	14
04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 행위	17
05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7
06 부당한 광고 판단 참고 사항	22

III 부당한 광고 사례

01 부당한 광고 사례	30
----------------	----

IV 부록

0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5483호, '18.3.13.제정)	66
0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법률 제15699호, '18.6.12.일부개정)	88
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15698호, '18.6.12.일부개정)	100

I 개요

01 | 배경 및 목적

- 1 배경
- 2 목적

02 | 관련 법령 및 용어 정의

- 1 관련 법령
- 2 용어 정의

03 |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및 현황

- 1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 2 부당한 광고 현황



01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식품 등 부당한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의 판매 시장 다변화에 따라 광고 매체도 기존의 신문, 잡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및 TV홈쇼핑을 넘어 최근에는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개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무분별한 부당한 광고 행위의 증가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의 홍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
 - 특히 최근에는 광고의 경향이 광고주(영업자)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배포하게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광고***를 통해 광고가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나타나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행정 기관의 모니터링 및 단속을 피하다님
 - *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광고 : 광고하고자 하는 자가 카드 형식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두고 광고 시간 및 기간을 정하면 충전된 금액이 있는 만큼 정하는 주기로 광고가 노출되고 사라졌다가 다시 금액을 충전하면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임

2 목적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에 대한 판단 안내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업체 등에게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관련 법령이 부당한 광고에 대해 포괄적 개념의 원칙만 제시해 두어 부당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판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임



02 관련 법령 및 용어 정의

1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18.3.13.제정, 「식품표시광고법」)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19.3.14.제정 · 시행)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4.25.제정 · 시행)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96호, '19.10.28)
 - 관련 :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관련 :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 나.목

2 용어 정의

- 광고** : 라디오 · 텔레비전 · 신문 · 잡지 · 인터넷 · 인쇄물 · 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 · 음향 · 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함)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 식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
-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
- 기구**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
- 용기 · 포장**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 · 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 · 포장을 포함).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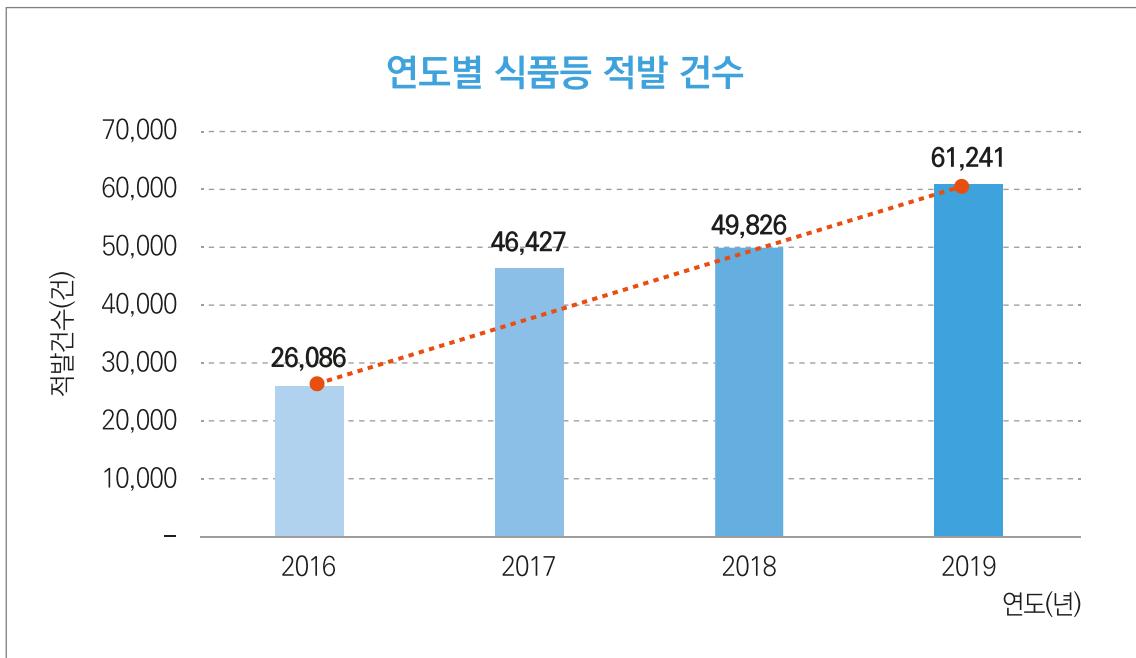
03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및 현황

1 부당한 광고 관리 방법

- **모니터링** : 국내외 온라인 상에서 부당한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민원 신고** : 국민신문고, 1399 등 민원 신고에 의한 인지 후 부당한 광고 여부 판단
- **교육 및 홍보**
 - 부당한 광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교육
 - 부당한 광고의 사전 예방 차원의 영업자 및 광고 관련자 교육
 -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2 부당한 광고 현황

* 부당한 광고 및 불법유통 포함



II

부당한 광고

-
- 01 | 광고 기준
 - 02 | 부당한 광고 행위 금지 대상
 - 03 | 부당한 광고 행위
 - 04 |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 행위
 - 05 |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06 | 부당한 광고 판단 참고 사항



01 광고 기준

식품등을 광고할 때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함

- 1** 식품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가공·처리·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등록·신고한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는 제외), 영·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 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마.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 4**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02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

- 1**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 포함),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03 부당한 광고 행위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된 식품]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 ·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다. 특수용도식품(영아 ·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 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 · 수유부 ·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 광고

4 거짓 ·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 ·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1) 「식품위생법」 제37조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 작용 · 효과 ·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 · 인증 · 보증 · 선정 ·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식품학 · 영양학 · 축산가공학 ·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 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 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 ·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혹하는 표시 · 광고

-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 · 광고
-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 · 광고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비교표시 ·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 광고
- 나.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 :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04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 행위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점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제조·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3 03. 부당한 광고 행위 1 및 3 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05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1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같은 매체로 광고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봄
- 2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함
-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함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다른 식품·축산물의 유형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바)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물 무” 등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아) 사료·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 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5)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6)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 · 운용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또는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 · 운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를 작성 ·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식품운반업 ·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제외),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외),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제외)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소를 폐쇄)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가)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사실과 다르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수상 또는 상장의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다른 식품 · 축산물의 유형과 오인 · 혼동하게 하는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 · 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사료 · 물에 첨가한 성분이나 축산물의 제조 시 혼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이 가지는 효능 · 효과를 표시하여 해당 축산물 자체에는 그러한 효능 ·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 · 광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받지 않고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4조제1항 및 이 규칙 별표 1 제5호 (식육판매업만 해당) 및 제6호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표시 · 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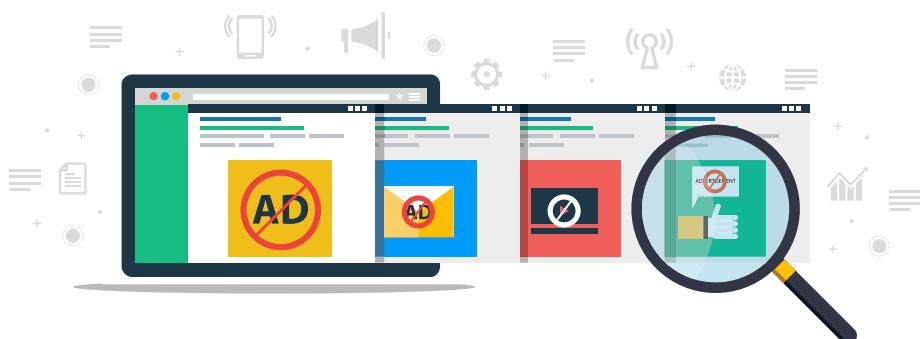


06 부당한 광고 판단 참고 사항

식품 등의 광고 기본원칙

※ 일반적으로 광고는 특정 단어나 문구 등의 내용만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 ④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광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예방 및 치료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함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 ※ ‘질병’의 범위 :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 www.koicd.kr)에서 제공하는 질병 정보 등을 참고

[부적합 예시]

- 생리통완화,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 소화도 잘 안되고, 빈혈, 성인병, 쇄변, 혈관 청소부, 고혈압, 비만, 노화, 소화성궤양, 피부질환 치료 도움, 비만 예방,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고지혈증, 골다공증,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 예방, 약용, 항암, 항염 작용, 콜레스테롤의 합성 억제, 만성 대장염, 우울증, 치매예방, 이질, 만성 대장염 치료에 도움, 정신적 안정, 청혈작용, 혈압 낮추는데 도움, 해독제, 감기,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 밥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 눈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여줌, 시력감퇴, 침침하지 않게, 안티에이징,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균 효과, 독감, 잔병 예방, 인슐린 조절 기능, 혈당 안정, 위염, 치질, 생리불순, 생리통, 암 발생 막아줌, 암세포 자멸, 심혈관 질환 개선 도움, 여성질환, 규칙적인 생리 등

2 의약품 오인 혼동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광고
-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 판매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부적합 예시]

- 공진(신)단, 경옥고, 익수영진고, 사군자탕, 사물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3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 ‘변비’, ‘다이어트’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한 것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하지는 않으나, 해당 단어와 연관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 위반으로 판단

[부적합 예시]

- 간에 좋은 식품, 간기능 개선
- 혈관 건강 등의 기능성 내용을 광고, 혈액순환 개선, 깨끗한 혈관, 피의 흐름 쾌적, 혈관 팽창
- 지방분해, 체중감량, 식욕억제, 다이어트에 도움, 대장 운동 활성화
- 집중력 향상, 피로 회복
-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 키가 쑥쑥 커요
- 피부에 수분 보충, 촉촉한 피부 등

4 거짓·과장

- 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식품위생법」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부터 제2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광고

[부적합 예시]

- 실제 해당 식품을 제조한 제조원이 'A업체'이나, 표시 광고에는 'B업체'로 광고하는 경우
- 식품제조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에서 'A원재료 함량 20%'이나, 표시 광고에는 'A원재료 함량 25%'인 경우
- 디톡스, 독성지방, 중금속 배출, 활성산소 제거
- 븗기제거 등

5 소비자 기만

- 체험기 광고
 - 광고주(판매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제품의 정보를 알림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있는 “체험기를 이용하여 광고” 하는 경우로서, 주로 홈쇼핑 호스트(연예인)의 체험담, 쇼핑몰 제품 구매 이용후기를 캡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함.
 - 특히,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는 개개인이 올린 제품의 후기글을 영업자가 직접 홈페이지 또는 전단지에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임



[부적합 예시]

- 1개 68㎉ 초저칼로리, 1일 -1.7kg감량, 3일 -5kg이상 감량, 1달 -50kg감량, 3일 만에 5~8kg감량' 등 효과가 있다고 체험사례 등 허위 과대광고
 - * 특히, 일반식품에 대하여 체중감량, 다이어트 등 비교 광고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을 적용하지 않고 "체험기 이용광고" 위반유형을 적용해야 함
- 'OOO 프로그램으로 55세 이OO는 15일 섭취후 4.1kg감량' 등 다이어트 체험사례를 올려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 연애인이 홈쇼핑에서 광고하면서 3개월전 체중 55kg에서 현재 50kg로 5kg감량했다고 맨트나 전후 비교사진을 보여주는 경우

- 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처럼 표현

- 가공식품의 **원재료(농산물)** 및 **특정성분**에 대하여 **질병 치료 예방 표방** 또는 **특정 신체 부위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원재료 또는 특정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어서 00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부적합 예시]

- 도라지차 제품 광고에 '도라지는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
- 크릴오일 제품 광고에 '크릴오일의 성분인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효과에 탁월하다'고 광고

- 이용후기 광고

-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쇼핑몰 구매후기(구매평가)에 후기글을 올리는 행위나 개인의 블로그, SNS 등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함

※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식품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사용후기 게시판)에 작성한 해당 식품의 사용 후기 내용이 같은 법 제8조제1항(부당한 광고 내용)이 되는 경우, 이용후기를 작성한 고객 및 영업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해당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삭제 등 관리하여 함

만일, 광고주가 삭제하지 않고 고의적 · 의도적으로 이용후기를 활용한다면, 허위과대광고 해당 될수 있음



6 타사 비방

• 타사 비방 광고

- 다른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부적합 예시]

- 객관적 근거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커피를 적당량 섭취시에는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녹차 제조회사가 커피제품이 무조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인 것처럼 ‘아직도 커피를 드십니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라고 광고하는 경우

• 사용 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등의 강조 표시·광고

- 식품 기준·규격(식품공전)에서 **보존료 불검출 식품유형**
※ 면류, 김치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포장육, 만두**

* **보존료**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 특히,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해당 식품유형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적합 예시]

- A 사 양념육에 당사는 “무방부제” 표현함, 이는 양념육에는 보존료를 사용할수 없음으로 타사 제품에도 기본적으로 보존료가 없음에도 A사는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타사는 보존료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됨





7 부당 비교

- 비교 표시·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함.**
 - 비교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 판단, 경험, 체험, 평가 등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범위는 허용되지 않음
 - 비교 표시·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참조

[부적합 예시]

- A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에 사용한 성분 함량에 대하여 타사의 모든 제품을 조사하지 않고 A사보다 성분 함량이 낮은 B, C사 제품만을 비교하여 A사 제품이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 곤약성분 함량 비교

A사	B사	C사
0.2g	0.15g	0.1g

※ 실제 D사의 경우 곤약성분 함량이 0.3g 있음

- 유일, 최상급 표현 및 광고 문구 용어정리에 대한 해석

최근 심의 사례

- 유일** :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에 해당됨으로 ‘최초’로 수정도록 함
- 최초**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므로 광고로 허용도록 함
- 최고, 최상, 최적** :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도록 함
- 최대** : 기능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허용도록 함
-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 건강기능식품공전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는 함량 표기를 준용하여 광고하여야 하며 고단위, 고순도, 고농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삭제도록 함
- 최대함량** : 비교기준이 명확한 경우 허용도록 함(ex. ‘식약처 일일섭취량의 최대함량’)
- 새로운 패러다임** :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 혼동 될 수 있는 광고 표현은 삭제도록 함. 다만, 기능성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형, 맛 등에 대한 광고 표현은 허용도록 함
- 청정지역** : 소비자가 본 제품이 타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오인, 혼동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조건부 허용도록 함

8 사행심 조장 및 사회윤리 침해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 식품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

-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동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추가)

- 사은품 제공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6.5.18.)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 제공, 일반식품 등과의 세트판매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

-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라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대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은품의 금액,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사은품을 득하는 것이 우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식품을 구매하여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은품금액이 판매하는 식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음

9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 광고

-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함



III

부당한 광고 사례

-
- 01 |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02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03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04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05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06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07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08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09 |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01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복용 7일후 나타나는 “당환”의 놀라운 효과!

당뇨 / 고혈압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한방에 끝?!

당뇨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약제

당뇨 개선 혈압강하

당뇨병보다 무서운 합병증
당뇨병 개선효과가 우수하며,
혈당강하는 매우 효과적이며,

성기는 진액 / 솔방침환 / 비혈관 질환
동맥경화 / 고혈압 / 당뇨성 혈액증

당뇨병 개선효과가 우수하여,
혈당강하는 매우 효과적이며,

매일 선착순 300명 1병 구입시

89,800 원

남성호르몬 증가
男 성능력 활성

만성당뇨, 고혈압 – 한방에 끝!
잃어버린 남성력 회복!

- 광고 매체 : 신문
- 부당한 광고 문구
 - 당뇨/고혈압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한방에 끝?!
 - 당뇨개선, 혈압강하
 - 당뇨병 개선효과가 우수하며... 혈당강하는 매우 효과적이며...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redacted]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좋은 피부를 위한 수분보충을
자주 해야하는 사람**

수분보충은 물론 알러지 및 아토피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수분보충을 자주하시는 분**

피부 수분증진은 물론 알러지 및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찾는
배가 많이 자주 아프신 분**

오래된 숙변 혹은 변비나 장트러블로
매일 고생하시는 분에게 좋습니다.



**밥을 먹어도 항상 배가
안꺼지고 더부룩하신 분**

위장장애가 있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슬림한 몸매를 가지고 싶거나
유지하고 싶으신 분**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빠지시거나
현재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약간의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자도 두기력하신 분**

신을 자도 생활이 무기력하고
활동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운동 후 수분 충전 하거나
음주 후 몸이 나른할 때**

면보하게 흡수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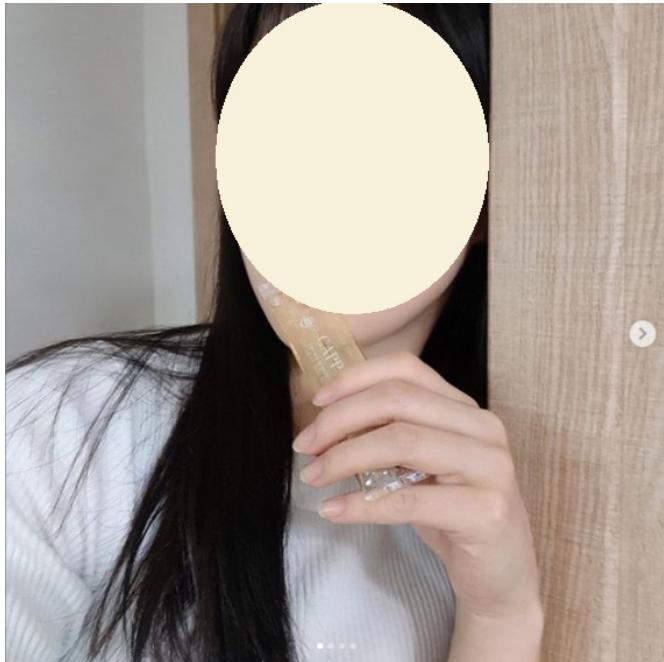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알러지 및 아토피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래된 숙변 혹은 변비나 장트러블로 매일 고생하시는 분에게 좋습니다.
- 위장장애가 있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보이 로그에서 문의 엄청 주셨던 #카핑풀 이 드디어 오픈 했습니다! #미엘르카핑프리미엄허니스틱#제주도산천연벌꿀100%#봉개꿀

카핑은 벌의 화분을 따로 채취하지 않아 영양소가 꿀에 녹아 들어가있습니다.

카핑 허니 스틱 !!
-면역체계자극
-체중감량
-심장질환위험감소
-소화불량완화
-피로감감소
-피부트러블감소 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원래 추석 선물세트로 한번만 보여드릴려고 하다가 먹어보고 너무 좋았던 미끼 냉장고에 기대고 먹지



좋아요 1,612

2월 전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심장질환위험감소
 - 소화불량완화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0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상품 01 HairAnew 탈모 모발 성장 비
오틴 함유 비타민 60정
10%
83,220원 93,500

상품 02 모발 성장 촉진제 탈모 방지 모
발 성장제 대머리 예방
5%
65,200원 69,000

상품 03 코코넛 오일 모발 성장 윤기 피
부 강력한 손톱 강화
69,000원

상품 04 Newopure 천연 모발 성장 비
타민 모발 성장 촉진 제
5%
106,780원 113,000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탈모 모발 성장
 - 모발 성장 촉진제, 탈모 방지 모발 성장제, 대머리 예방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탈모약초보감



더 이상 탈모로 고민하지 마세요

탈모약초보감 헤어라클스로 해결하세요

불치의 병이라는 탈모!

현대 과학은 이를 남성 호르몬 과다분비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의 체

질을 개선시켜 탈모(禿毛)를 방지하고 생모(生毛)를 도와주는 천연 한방 약초 성분의 헤어라클스™는 남,녀

유전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를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헤어라클스™는 하수오 (何首烏), 여장자 (女貞子), 상신자 (枸杞子), 구기자 (枸杞子), 황불류행, 을무 (薏苡仁), 인진 쑥, 택사 등의 천연한방 약초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헤어라클스™는 섭취 한달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탈모의 진행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섭취 두 달이 경과하면서 모발이 굵고 길어지며 세달째부터는 새로운 모발이 빠진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거나 경년기, 자궁 문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헤어라클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한방천연약초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없으며 섭취하는 동안 몸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성탈모 - 탈모는 남성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의 병폐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로 호르몬의 불균형, 빈혈, 다이어트, 경년기 증상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여성 탈모의 특징은 대개 앞부분과 경수리의 머리가 유풍이 없어지고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양상을 띠게 되며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탈모로 고민하지 마세요, 탈모약초보감 헤어라클스로 해결하세요

- 유전성 탈모와 스트레스성 탈모를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

- 탈모의 진행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모발강화 유럽 No.1제품



제품 특장점

- 1** 프랑스 건강 식품 분야 No. 1 제약사인 아코파마사의 **탈모방지**, 모발강화, 손톱강화 제품입니다.
- 2** 아코카필은 모근을 강화하고 모발 **탈모를 방지하고 풍성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들어 드립니다.
- 3** 일체의 화학적 추출 없이 오직 식물에서 추출한 100% 천연성분을 사용합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 5** 아침 식사 직후 충분한 양의 물과함께 하루 1회 간편하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코카필은 하루 2캡슐, 아코카필헤어액티브는 하루 1정)
- 6** 아코카필헤어액티브는 섭생에 애민하게 주의하셔야 하는 임산부(임신4개월차 이후)와 수유중인 분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머리빠짐에 대박 !!**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탈모방지
 - 탈모를 방지하고
 - 출산 후 머리빠짐에 대박!!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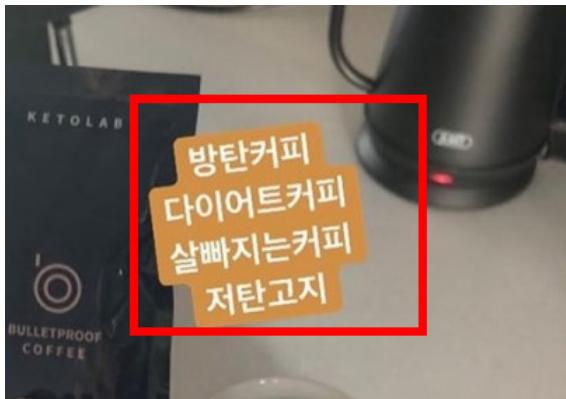


0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광고 매체 :** 온라인(인스타그램)
- **부당한 광고 문구**
 - 다이어트 음료예요!
 - 국민다이어트 과일 #깔라만씨에 2018 대박 다이어트템 #레몬밤 까지
 - 마시면서 자동다이어트예요...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aeji • 팔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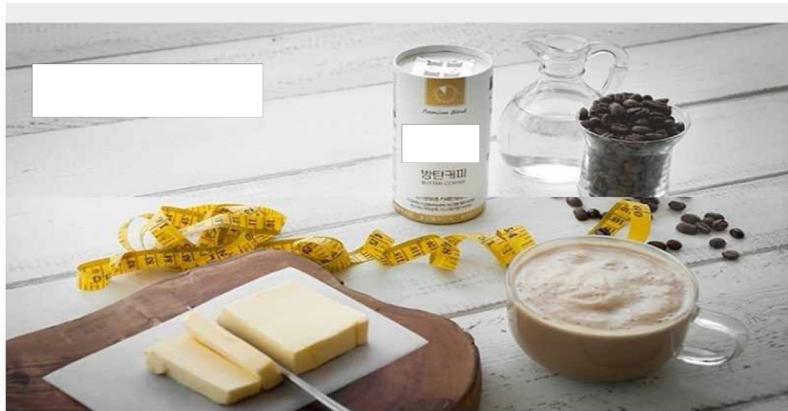
(이런듯이..?)

탄수화물을 먹던 몸이 지방이 에너지
위으로 바뀌면서 오래시가 음식을 먹
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이 전혀 없어요,
코코넛오일과 전연버터를 함유했기 때
문이죠! -
맛은 믹스커피에서 달콤한맛이 빠진
고소하고 부드러운 커피라고 생각해주세요!

- 광고 매체 : 온라인(인스타그램)
- 부당한 광고 문구
 - 다이어트커피, 살빠지는 커피...
 - 먹지않아도 배고픔이 없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탄커피

커피 + 목초버터 + MCT오일 넣고 믹서기로 섞어서 만드는 방탄커피



키토제닉(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과 간헐적 단식은 꽤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효과를 공유하면서 이제는 생활화 되었고

기존의 저칼로리, 굶주리는 고단의 다이어트가 아닌 마음껏 먹으면서 건강증진과 체중 감량까지 되는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탄커피
- 키토제닉(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행복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입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우리 아이 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성장판 닫히는 평균 연령



1차 성장기(0~2세)에는 연 10~25cm 씩 성장합니다.
이후 연 평균 5~6cm 성장하게 됩니다.

2차 성장기는 남 13~15세, 여 11~15세 쯤이며,
14~16세쯤 다리 성장판이 닫히고,
이후에는 허리 위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16~18세연
모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조사센터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키성장 특허출현, 키크는 영양제
 - 우리 아이 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한끼 대용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365DAY SR103 PROJECT

(70kcal) x 10포(1BOX) 1개월분

성장관련에 현실적인 영양밸런스를 제공합니다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칼슘, 흐모추출물로 우리몸에
최적화된 건강하고 맛있는 성장간식 쉐이크

**맛없고 영양이 부족한
성장제품은 이제 그만!**

포부한 역약소, 흐모추출물로
키성장에 최적화된 쉐이크

- 영양 대용식으로 드실 수 있으며 우유나 두유 100ml~200ml에 타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 국내 특허등록된 흐모추출물SR103과 다양한
곡을 함유로 낭비노소 누구나 섭취 가능

1

어린이에게는 키성장과 자신감을!

효모에서 추출한 성장관련 특허물질 SR103과
4종 멀티 칼슘이 키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키성장에 최적화된 쉐이크
 - 어린이에게는 키성장과 자신감을!
 - 키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 이런분께 좋습니다! []

- 기력회복, 원기보강이 필요하신 중장년 분들
- 평소 면역력을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
- 몸이 차고 냉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들
- 자양강장, 기혈을 보충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려는 분들
- 어린이, 청소년들의 집중력 향상과 성장발육을 원하시는 분들



는 다행입니다.

스틱으로 더욱 편하게
비쁜 현대인의 삶에 맞게
보관과 섭취가 편한 스틱형 포장

고급첨형제 녹용이 조화
된 고기력, 비로회복
체력, 혈액순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족으로 더욱 건하게
한번채로를 놓으하여 적은 양
으로 최상의 효율을 기대합니다.

**귀하고 귀한 공신보!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 중장년이 지나면서 몸이 예전같지 않으신 분
- 빠른 시간에 기력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
- 집중력, 체력이 중요한 수험생
- 야근과 흡식으로 피곤한 직장인
-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잔병이 많아지는 분
- 체질적으로 약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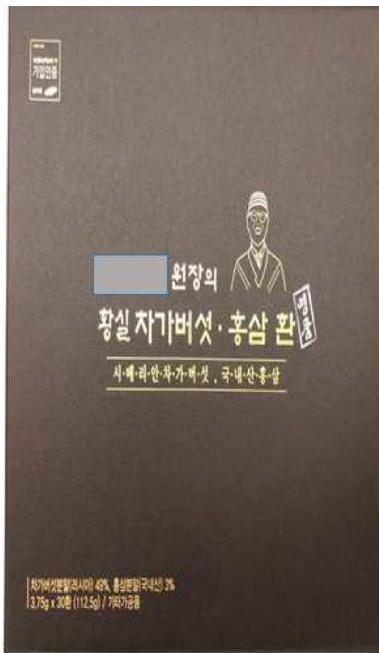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평소 면역력을 증진을 원하시는 분들/ 몸이 차고 냉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들
-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잔병이 많아지는 분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최고급 시베리아 차가버섯을 주원료로 한
차가버섯·홍삼환

최고급 시베리아 차가버섯과 국내산 홍삼, 산속의 징어라 불리는 마, 체력의 상장인 쌈눈,
천연 강장제인 벌꿀을 배합하여 만든 면역력에 탁월한 건강환입니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홍삼환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병치례 하시는 분들
- 늘 건강이 걱정되는 연로하신 부모님
- 성장기 어린이 및 공부하는 청소년
- 고마운 분들께 감사선물
- 항상 피곤한 현대인들의 활力 충전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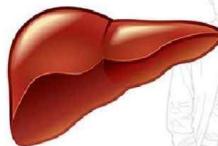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면역력에 탁월한 건강환
 -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병치례 하시는 분들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당신의 肝(간)은 건강하신가요?

간 건강과 에너지를 동시에
독보적인 간 건강 맞춤 솔루션
궁금한 간 닥터 Solution



궁금한 간 닥터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굽뱅이를 비롯하여 핫개, 강황 등이 다양한 힐유되어 있으며 특히 경우고 원리인 인삼과 복령, 생지황, 벌꿀의 최적의 배합비율로 탄생되었습니다. 궁금한 간 닥터는 한의학 연구원들이 5년간 체계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수백번의 원료배합 테스트를 거친 후 완성되었습니다.

궁금한 간 닥터는 건강한 간과, 활동 피로회복에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한 척고의 선물입니다.

드시는 분 모두에게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11가지 원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잡은 과음으로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평소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
- 면역력 및 기력회복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광고 매체 :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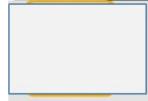
- 부당한 광고 문구

- 간건강, 간건강 맞춤 솔루션 / 건강한 간, 피로회복
-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잡은 과음으로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면역력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



0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노폐물을 빼준다에 *내림* + 빼어날 *수(秀)를 합쳐.

체형 관리와 수분보충, 맛, 기능 모두를 쟁기고 싶은분들을 위한 건강 차 입니다

호박즙이 맛없어서 못먹겠다하시는분들

부종, 불기로 스트레스받으시는분들

하루에 2포씩 쌈-악 빼주세요!

붓기에 좋은 원료들은 다 들어가있는 “내림수”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노폐물을 빼준다에
- 부종, 불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 붓기에 좋은 원료들은 다 들어가있는 “내림수”

- **행정처분 :** 시정명령





MASTER 클렌즈주스 코스 5일

강력한 디톡스 기능과
밸런스 잡힌 영양공급에 특화된
메시주스의 모든 클렌즈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보다 깊고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코스프로그램.

167,300원 181,800원

배송비 3,000원(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MASTER 주스클렌즈 코스 5-DAYS

강력한 디톡스 기능과
밸런스 잡힌 영양공급에 특화된
메시주스의 모든 클렌즈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보다 깊고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코스프로그램입니다.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강력한 디톡스 기능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이번에 재고고 터이 길었죠?
우리 모두의 인생 **붓기차** 가를수 오픈
했습니다.♥
해썹 인증은 물론이고, 호박 우엉 꿀 옥
수수수염 병풀 등
국내산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제약회
사에서 만든
안전하고 믿을만한 제품이랍니다 거기
다가 한약맛 XXX
진짜 꿀맛이랍니다. 거부감 없는 맛!
아직 몸에 맞는 **붓기차** 못찾으신 부들
성현 하셨거나 계획 있으신분들,
출산붓기로 고생중이신 분들,
장시간 업무로 하체부종이 심하신 분
들 모두 꼭 드셔보세요 ♥
재구매율 200% 인데다, 재구매땐 기본
7박스씩
챙여두시는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후기들은 하이라이트 참고해주
세요.^^



좋아요 4,493개

7월 29일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 광고 매체 : 온라인(인스타그램)

• 부당한 광고 문구

- **붓기차**

- 아직 몸에 맞는 **붓기차** 못찾으신 분들... 출산 **붓기**로 고생중이신 분들, 장시간 업무로 하체부종이 심하신
분들 모두 꼭 드셔보세요♥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삼개월만에 찾아온 #
붓빠차 #붓기빠이차 ❤

- ✓나 아침마다 너무 붓는다
- ✓찐거+야식 매니아
- ✓과한 음주 + 폭식 하시는분
- ✓성형붓기 급하게 빼야한다

해당되는 사람 다 저한테 오라규!!!!!!
걍오도오오

한번 마셔보면 그 차이 때문에 절대 못
끊음ㅋㅋㅋㅋ

사논거 다먹어서
주인이 필요해서 하는 공구 ☕

좋아요 453개

3월 27일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 **광고 매체 :** 온라인(인스타그램)

- **부당한 광고 문구**

- **붓빠차 #붓기빠이차❤**

- 나 아침마다 너무 붓는다...성형붓기 급하게 빼야한다...해당되는 사람 다 저한테 오라규!!!

- **행정처분 :** 시정명령





#붓기앰플 #호박앰플 은 오늘 오후 3 시에 마감되어요!
붓기를 그냥 방치하면 살이 되는거 아 시죠?

붓기를 빼주는것이 다이어트의 기본이에요!
붓기완화뿐 아니라 피부미용,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엄청난 성분들이 믹스된 #호박앰플
꾸준히 드시면 체중감소의 효과도 함께 보실수 있어요

오늘 3시이후엔 주문창 닫혀요ㅠㅠ
공구 끝났는데 주문못했다고 열어달라구



좋아요 488개

2월 15일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 광고 매체 : 온라인(인스타그램)
- 부당한 광고 문구
 - #붓기앰플#호박앰플
 - 붓기완화뿐 아니라 피부미용,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호박앰플
- 행정처분 : 시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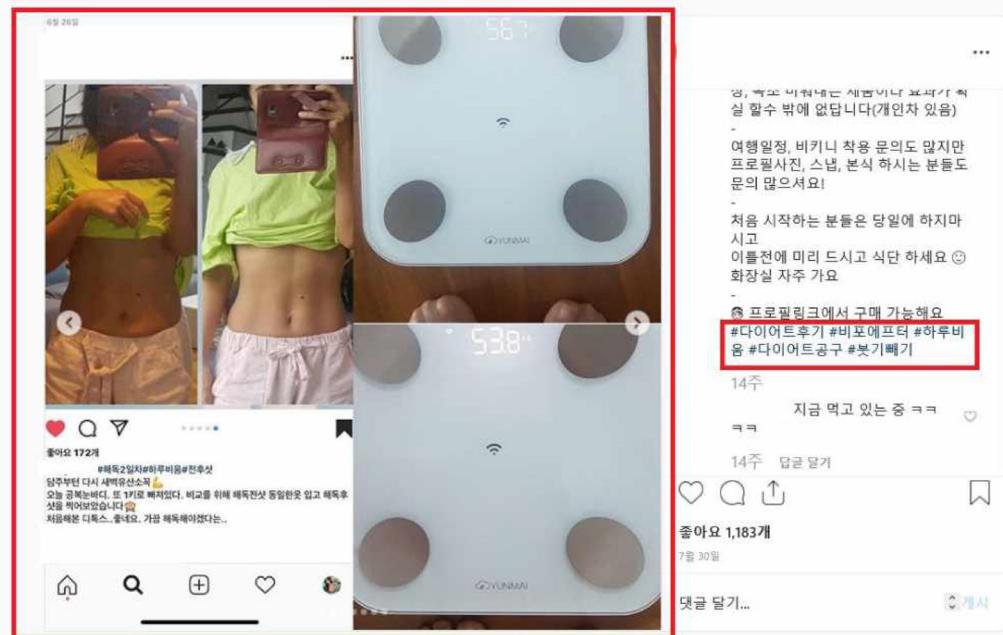


0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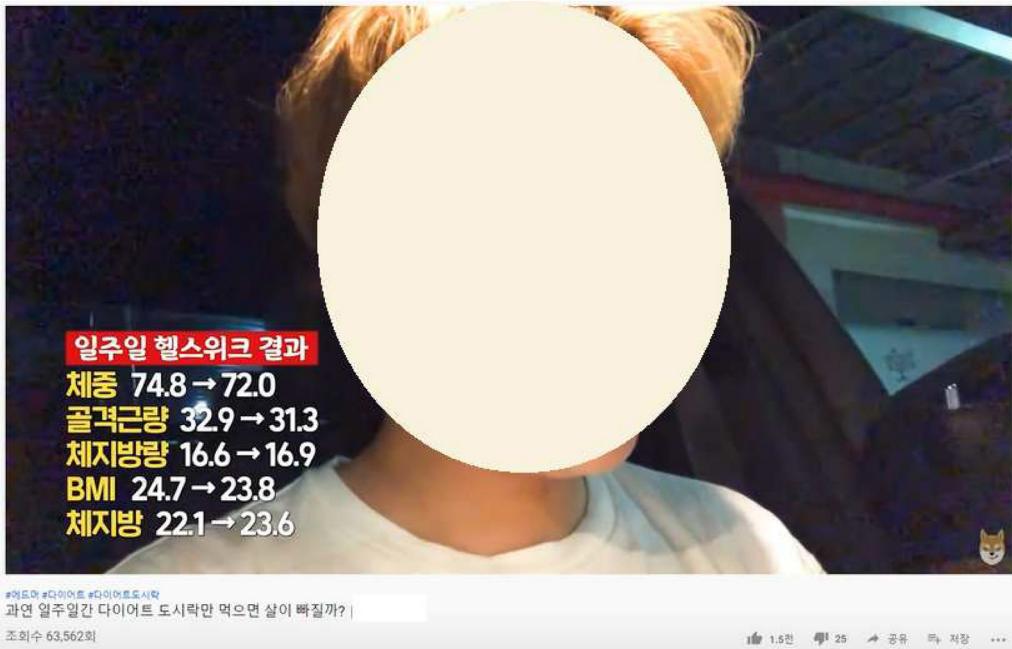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제품 이용 전후 비교 사진 및 체중 변화 등 **체험기 이용한 광고**
- **행정처분** :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제품 이용 전후 비교 사진, 체중 변화 사진 등 **체험기 이용한 광고**
- 행정처분 :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제품 이용 전후 체중, 골격근량, 체자방량 등 변화 **체험기 이용한 광고**
- **행정처분**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영업정지 7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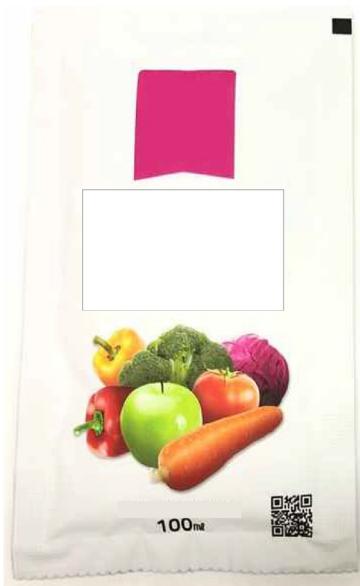




- **광고 매체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제품 이용 전후 비교 사진 등 **체험기 이용한 광고**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실제 [REDACTED]를 드시는 분들 후기입니다~



1자나 1시간전에 봐야겠네요
저6개월정도 먹었자나여
근데 15키로빠졌어요
[REDACTED] 그때 막었는데
근래가 7개월인데 흔히도
너무질이내여+엄마있어 를
연신외출다니, ㅎㅎ痼구
제가탄산중독인데
...하고부드는 탄산같았어요
챙기지도 않고 좋은거먹는데
망치고싶지않아서라...
연년상금으로서 몸이가 살이축적된게
안빠졌는데 짐계속으로면서
운동방법도더니 확실히좋아졌어요
나자자그마 조금씩보이네요
13키로빠진거 지금은 빠지고도
더빨아어충
[REDACTED]
해여!!!

대박!!^^
2개월째 먹고 있는데요 제가
가 종 심한 편인데요 주스
제주도에서 사온거 먹었는데요
제중도 8킬로 빠졌구요 피부
[REDACTED]
걱정했는데 맘마 부드럽고 여기 편해서
더더욱 좋아요~ 주변에서도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길 자주 들으니 주스
덕분인것 같아요! 디톡디 잘 생겨
먹어야 겠어요^^
감사해씨 주스 광 맛잇구요 다 먹고
도 주문할께요^^ 야 할 청혈주스도
먹어볼 생각입니다.
대박나세요 ♡

하루이체와 체감데이요~
10일동안 하루도 안거르고
고박꼬박 생기며 있습니다.
...
주스는 진~~~짜
진영이 먹는느낌?ㅎ
맛도 너무너무 좋아요.
체감데이이 한입에 폭!!
10일동안 3키로 감량했구요~
(이상이의 옷이전주
같은시간에 체크)
물론 식이요법도 같이했습니다.
제가 여드름피부인데
미세하게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에도 꽝꽝꽝!!
꾸준히 복용하면 널 좋을꺼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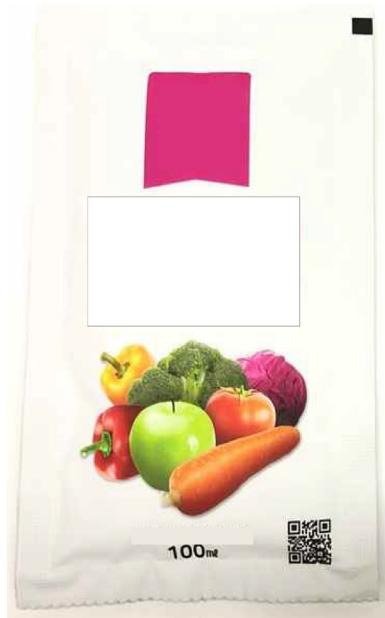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참조은



함께 마셔보아요~

- **광고 매체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저6개월정도 먹었자나여 근데15키로빠졌어요...”,
 - “제중도 8킬로 빠졌구요 피부도 맑아진듯해요...”, “10일동안 3키로 감량했구요~...” 등 **체험기 이용한 광고**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7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솔루션 자세히보기

당근

블루베리

파프리카

피부미용 및 눈 건강 도우미

양배추

사과

마(산약)

속을 편하게 장을 편하게 도우미

호박

토마토

가볍게 노폐물 배출 및 수분조절 도우미

브로콜리

배

피로회복 및 장 건강 도우미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당근 등 피부미용 및 눈 건강 도우미, 양배추 등 속을 편하게 장을 편하게 도우미, 호박 등 가볍게 노폐물 배출 및 수분조절 도우미, 브로콜리 등 피로회복 및 장 건강 도우미'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쑥의 영양 성분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100g기준/쑥 생식

단백질
치네올
베타 카로틴
철분
폴리페놀

인
나이아신
비타민A
비타민B1

쑥의 유효성분

플라보노이드 & 치네올 & 베타카로틴

치네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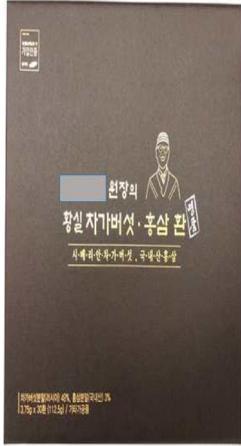
쑥의 향을 내는 물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
(화학기호=C₁₀H₁₈O)

베타카로틴

비타민A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쑥의 유효성분..베타카로틴..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행정처분 : 시정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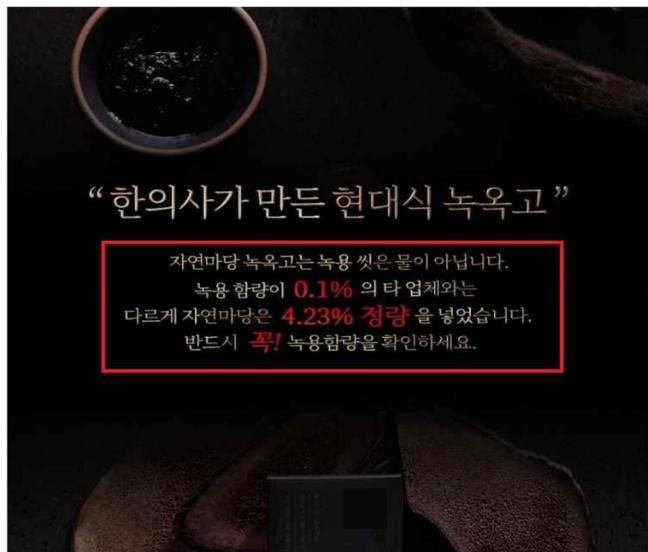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한의사가 제품을 '추천'한다는 광고
- **행정처분** : 시정명령



0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녹용 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자연마당은 4.23% 정량을 넣었습니다.
- **행정처분** : 시정명령



0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무느만 ‘곤약’젤리는 그만!
벨리불리가 **진짜 곤약젤리**

상품정보

상품리뷰 (285)

상품문의 (98)

반품/교환

곤약 함유량

(150ml 기준)

A제품

B제품

벨리불리

0.12%

0.15%

0.2%

곤약이 2배! 차원이 다른 탱탱함과 쫀득함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곤약 함유량 : A제품 0.12%, B제품 0.15%, 자사제품(벨리불리) 0.2%
- **행정처분** : 시정명령



폴리코사놀

폴리코사놀 함유량 1,200%



*출처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3.04.26)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폴리코사놀 함유량(mg/100g)이 사탕수수와 비교한 결과 약12배 높음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제품명	합성비타민 및 합성첨가물	제조방법	업자의 크기
A사 ****	산탄검,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아가베시럽	물추출방식	일반
B사 *****	젤란검, 수크랄로스, 아가베시럽	물추출방식	일반
C사 ***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엑상과당, 젤란검	물추출방식	일반
D사 ****	수크랄로스, 아가베시럽,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물추출방식	일반
E사 ****	아가베시럽, 산탄검, 수크랄로스	물추출방식	일반
F사 *****	비타민 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A, 엽산	물추출방식	일반
G사 *****	합성착향료, 비타민C, 구연산	물추출방식	일반
H사 *****	비타민C, 비타민B1영산염, 비타민B6영산염	물추출방식	일반
I사 ***	구연산, 젤란검, 산탄검	물추출방식	일반
J사 *****	비타민A혼합제제, 비타민B6연삼엽, 아가베시럽	물추출방식	일반
	없음	분말액방식	초미세

국내 대다수 홀삼 브랜드들은 홀삼을 물에 달이는 물추출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관련 서적 <최신인삼재배>에 따르면, 홀삼 성분 중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은 47.8%이다. 따라서 물 추출방식으로 제품을 만들 경우 52.2%의 지용성 성분은 달이고 남은 홀삼박과 함께 버려진다.

비타민만해도 비타민 B, C는 수용성이지만,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 구분없이 모두 제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제조방법에 따른 제품의 유효 성분을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비교함
- **행정처분** : 시정명령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육포'를 드셨습니까?

시중의 일반 육포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인위적인 맛을 내기 위해
방부제, 발색제, 변색방지제 등 인체에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방부제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방부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대부분의 육포로 소르빈산칼륨 사용

부작용 : 중추신경마비, 출혈성위염, 간에 악양증, 발한증, 경색증이상, 눈, 피부염이 자극

변색방지제

식품의 산화에 의한 변색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육포의 변색을 막기하기 위해 에르소르빈산 나이트를 등 사용

부작용 : 글리세스테롤 상승, 오르론제에서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협변제 이동, 환경 체증 저하, 신생아 무뇌증 사례가 있습니다.

발색제

육포도 강강술래가 만نة

최고의 맛과 품질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방부제, 발색제, 변색방지제 : 3無
- 행정처분 : 시정명령



0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남녀 사진 등
- 행정처분 : 시정명령



09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 :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치과의사가 엄선한 의 특별한 7가지 부원료	
	가시오가피 분말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아칸토사이드D 성분이 다량함유
	옥수수수액 추출분말 이뇨작용에 탁월해 부종 봉기를 도와줍니다.
	숙지황 추출분말 지황의 뿌리를 써서 밀린 한약재로 뼈간화에 도움을 줍니다.
	홍화씨 추출분말 홍화씨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백금은 뼈를 강하게하고 혈액을 맑게합니다.
	리소진 침엽세균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요소로 면역과 염증치료를 도와줍니다.
	프로폴리스추출분말 꿀벌이 만들었던 성분으로 항염과 면역에 좋습니다.
	자커리뿌리추출분말 강장제로 작용하여 복기안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뼈 건강!



- **광고 매체 :**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함
- **행정처분 :** 품목제조 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제품 설명

[]는

가르시니아 카보지야 추출물(Garcinia cambogia)과 알로에(Aloe)를 주요성분으로 하여 지방생성을 억제하고 복부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감소시키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매번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영양을 위한 에너지는 보조하고

기초대사를 촉진시켜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소비해 체중을

이상적으로 조절, 다이어트의 성공을 유도해줍니다.

[]는 타 다이어트 제품에 비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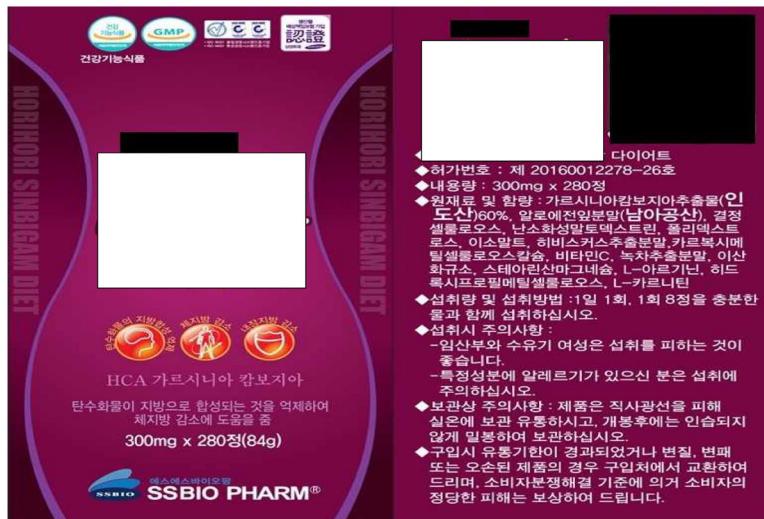


호리호리 상표는

제조원인 에스에스바이오피와 연구개발자인 환의사 []이
공동으로 상표 등록 출원한 다이어트와 관련한 브랜드 상표입니다.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

다이어트로 꼭실히 달리집니다.



- **광고 매체 :**온라인
- **부당한 광고 문구**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 함
- **행정처분 :** 품목제조 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업종에 따라 처분기준 다름)



IV

부록

01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법률 제15483호, '18.3.13.제정)

0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법률 제15699호, '18.6.12.일부개정)

0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15698호, '18.6.12.일부개정)



0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용기·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자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자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p>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p> <p>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p> <p>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 · 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소분(小分) : 원자재를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수입 · 포장 · 보관 ·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인을 말한다.</p> <p>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성분명 및 함량용기 · 포장의 재질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포장일자 <p>④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인을 말한다.</p> <p>⑤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원료의 함량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p>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을 경우에는 용기 · 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 · 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 · 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 · 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 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기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 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p> <p>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p>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p>		<p>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 (기름에 뿌긴 면), 국수 또는 냉면2. 즉석섭취식품(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p>
<p>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p>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 추적관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인증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p>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p>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p>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p>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용도식품(영아·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건강기능식품 <p>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p>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p> <p>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p> <p>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표시 · 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 · 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표시 · 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p> <p>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2. 표시 ·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3. 표시 · 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p>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p> <p>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3. 심의 대상4. 심의 기준5. 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기준6. 심의 수수료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해야 한다.</p> <p>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p>
<p>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 ·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식품등 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 · 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의 표시 · 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p>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사항
<p>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 · 포장 · 보관 ·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p>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 · 가공 · 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자체 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 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p>		<p>제15조(회수 · 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 · 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p>		
<p>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p>3.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p>3.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 「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p>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소분 · 수입 · 포장 · 보관 ·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판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판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p>	<p>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일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자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p>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p>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p> <p>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p> <p>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p> <p>4.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2조 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p>⑤ 제1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p> <p>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p> <p>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취소하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않은 경우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1. 시·도: 40퍼센트 2. 시·군·구: 60퍼센트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들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4. 제1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자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정]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3조제1항 관련)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 ·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다. 특수용도식품(영아 ·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 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 · 수유부 ·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 광고

4. 거짓 · 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 ·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1) 「식품위생법」 제37조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 작용 · 효과 ·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 · 인증 · 보증 · 선정 ·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 · 영양학 · 축산가공학 ·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현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 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 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 ·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혹하는 표시 · 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 · 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 · 광고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ㅊ.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 캬.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비교표시 ·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 광고
- 나.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점객업 영업소에서 조리 · 판매 · 제조 ·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 (제8조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1. 식품등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 · 가공 · 처리 · 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 · 등록 · 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는 제외한다), 영 · 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 신문 · 잡지 · 라디오 · 텔레비전 · 음악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 모자보건시설 ·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 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마.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식품 · 축산물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 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9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 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 · 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 광고.

(예시)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달류, 커피, 인삼 · 흠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 · 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 · 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 · 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 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조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 · 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 · 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 · 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 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밸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₂) 무첨가” 표시 · 광고(셀러리 분말과 밸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₂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 · 광고
-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 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 · 광고
-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 · 광고
-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 · 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 · 광고
-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 · 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 자.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 광고
-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 · 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은 제외한다.
- 1) 합성향료 · 착색료 · 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학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 3) 자연상태의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 · 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 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팔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령」제21조제3호 · 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 · 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품질에 관한 정보·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자수(Glycemic Load, GL) 등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거.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광고. 다만,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예시)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와 달리 이 ○○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가. 식품등의 용기·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광고
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 - 96호, 2019.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다목·라목·아목·타목·파목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자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 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보아전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굴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파원액, 청파액, 청파원, 은교산, 성장액



[별표 2]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용어 정의와 범위

공정명	용어 정의	제외
세척	물(세척액 포함)을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
박피	칼과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김	열수, 스팀, 화염, 알칼리 용액 등을 이용한 박피 제외
절단	자르거나 베어서 끊음	-
압착	압력을 주어 물체를 납작하게 하여 과일주스, 종자나 견과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
분쇄	식품을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	マイ크로, 나노 단위의 미분쇄 제외
교반	휘저어 섞는 것	-
건조	수분을 증발시켜 없애는 것(동결건조 포함)	60°C 이상의 열풍건조 제외
냉동	-18°C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냉장	0~10°C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성형	틀을 써서 식품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
압출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어 국수, 냉면 등을 뽑는 것	-
여과	거름종이, 체, 망 등을 사용하여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을 걸러 내는 것	예) 이온교환 필터를 이용한 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원심 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나누는 것	10,000rpm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 제외(특정성분 제거) 예)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ation)
혼합	손 또는 믹서로 뒤섞어서 한데 합함	-
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것	-
숙성	식품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자체의 효소, 미생물, 염류의 작용으로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것	-
자연 발효	식품 자체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 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아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것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제외
용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을 만드는 것	-

0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개정 2011.9.15>		
<p>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나 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인터넷 또는 PC통신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p>[전문개정 2012. 9. 5.]</p>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p>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p> <p>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p>	<p>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유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p>	
	<p>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광고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p>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p> <p>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p>1.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p> <p>[전문개정 2012. 9. 5.]</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p> <p>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p> <p>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p> <p>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p> <p>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로인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시장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4조의2 삭제 (2010. 3. 22.)</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들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4조(실증 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p> <p>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시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시험·조사기관으로 한다.</p> <p>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p> <p>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7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p>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를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p>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7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 행위의 개요2. 관계 법령 조항3. 시정방안(제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돋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이 조에 따른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7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p> <p>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5.]</p>	<p>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p>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p>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p>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매출액 신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9. 5.]</p>	
제3장 손해배상 <small>(개정 2011.9.15)</small>		
<p>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들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13.]		
제4장 보칙 〈개정 2011.9.15〉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9. 15.]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들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있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심의 대상 심의 기준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 대상 표시·광고를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② 제9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9. 5.]</p>	
<p>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4. 1. 28.〉</p> <p>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13.〉</p> <p>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협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3. 8. 13.]</p>	<p>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한국소비자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11. 5.]</p>	
제5장 벌칙 (개정 2011.9.15)		
<p>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1. 28.〉</p> <p>[전문개정 2011. 9. 15.]</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9호, 2018. 6. 12.,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p>		
<p>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p> <p>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p> <p>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5. 삭제 <2018. 6. 12.></p> <p>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p> <p>8. 삭제 <2018. 6. 12.></p> <p>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p> <p>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6. 12.></p> <p>[전문개정 2011. 9. 15.]</p>	<p>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4.></p> <p>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4.></p> <p>[전문개정 2012. 9. 5.]</p>	

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p>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일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족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족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2조(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또는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다만,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화·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p>[전문개정 2012. 8. 17.]</p> <p>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조(법 적용 제외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 회사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p>		
<p>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2012. 6. 1.)</p> <p>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제4조(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송신한 경우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자도 해당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8. 13.]</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자우편의 본문에 표시하거나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출력방법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본문 <p>[본조신설 2012. 8. 13.]</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제4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본문 <p>[본조신설 2012. 8. 13.]</p> <p>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p> <p>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p>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 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p> <p>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 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접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2. 재화등의 가격3. 응역의 제공기간 <p>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기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종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10조(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들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복사 허용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 결제업자등의 보안유지 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를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기관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p>[전문개정 2012. 8. 17.]</p>	<p>제11조(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조) 재화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분쟁의 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 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사고 또는 장애 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1조의2(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①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p>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 <p>[본조신설 2012. 8. 13.]</p> <p>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p> <p>[본조신설 2012. 8. 13.]</p> <p>[제11조의3에서 이동 <2016. 9. 29.>]</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게시판을 통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2. 공정거래위원회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11조의3(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의 운영 방법)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기 위한 장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소비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 조정기구"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에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할 것2.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과 그 대행 절차를 표시할 것 <p>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6. 9. 29.]</p> <p>[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2016. 9. 29.>]</p>	
<p>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4. 사업자등록번호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개정 2016. 9. 29.〉</p> <p>[본조신설 2012. 8. 13.]</p> <p>[제11조의3에서 이동<2016. 9. 29.>]</p>	<p>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p> <p>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격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할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1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확인 등) 법 제11조 제2항에서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2.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3.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금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 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스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9.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p>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종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p> <p>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p>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점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p> <p>②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종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p> <p>제17조(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종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용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17. 12. 29.〉 [전문개정 2012. 8. 13.]</p> <p>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 판매 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전문개정 2012. 8. 17.]</p> <p>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9. 2016. 9. 30.〉 [전문개정 2012. 8. 17.]</p> <p>제1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 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자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3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9. 30.〉 [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 2.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 3.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제6호의 경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예치된 금액은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할 것 4.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5.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종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p>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깔끔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p>제19조의2(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계약내용 관련 서면 교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자가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하도록 동의한 경우 2. 통신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p>[본조신설 2012. 8. 13.]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 8. 13.)]</p> <p>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 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p>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종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p> <p>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p> <p>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p> <p>5. 정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p> <p>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p> <p>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p> <p>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p> <p>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p> <p>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지 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7.]</p>	<p>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p> <p>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p> <p>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자가 제28조의3제4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로 할 것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은 소비자가 예치한 결제대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할 것(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자체 없이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결제대금 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조정할 것)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난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전문개정 2012. 8. 13.]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 8. 13.>]	
	<p>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전문개정 2012. 8. 13.]	
	<p>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 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개정 2016. 9. 29.〉</p> <p>1.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p> <p>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p> <p>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개정 2016. 9. 29.〉</p> <p>1.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p> <p>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p> <p>[전문개정 2012. 8. 13.] [제목개정 2016. 9. 29.]</p>	
<p>제14조(청약확인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p> <p>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p>	<p>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p> <p>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또는 일부를 지금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2. 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p> <p>2. 사업자등록증</p> <p>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6조 삭제<2005. 3. 31.></p>		
<p>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p> <p>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p> <p>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p> <p>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p> <p>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p> <p>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p> <p>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p>	<p>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9. 29.〉</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 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p> <p>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p> <p>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 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p> <p>[본조신설 2016. 9. 29.]</p> <p>[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9. 29.)]</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기분적 용역 또는 기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p>		
<p>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p>	<p>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9. 29.]</p> <p>제22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3조(채무의 상계) ① 결제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계(相計)를 요청할 경우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p> <p>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p> <p>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자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자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p> <p>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p> <p>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p> <p>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p>	<p>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p> <p>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재화등을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 할 것</p> <p>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금액명세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통신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자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p>[전문개정 2012. 8. 13.]</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p>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자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p>		
<p>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p>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알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p>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6. 3. 29.]</p>	<p>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p> <p>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p>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종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p>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같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 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개정 2016. 9. 29.〉</p> <p>1.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p> <p>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p> <p>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개정 2016. 9. 29.〉</p> <p>1.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p> <p>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목개정 2016. 9. 29.]</p> <p>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p> <p>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p> <p>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 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p> <p>[본조신설 2012. 8. 13.]</p>	
<p>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p> <p>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2. 2. 17.]</p>		
<p>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p> <p>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거짓 또는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p> <p>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p> <p>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p> <p>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p> <p>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p>	<p>제26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2.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2. 8. 17.]</p>
	<p>제27조(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1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등</p> <p>라.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p> <p>2.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p> <p>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p> <p>〈개정 2016. 3. 29.〉</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p>		
<p>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p> <p>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p> <p>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체결된 재무지급보증계약</p> <p>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동계약</p> <p>② 통신판매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삭제 <2013. 5. 28.></p> <p>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p> <p>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 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p> <p>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p> <p>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인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p> <p>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p> <p>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합의</p>	<p>1.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p> <p>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할 것</p> <p>3.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p> <p>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p> <p>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p> <p>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 전자결제수단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p> <p>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일 것</p> <p>3. 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6호의 경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또는 우체국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예치된 금액은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할 것</p> <p>4.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p> <p>5.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p> <p>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한다.</p> <p>1. 제3자는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게</p>	<p>1.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p> <p>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자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p> <p>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자체 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이 잦은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자체 없이 조정할 것</p> <p>2.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p> <p>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서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30일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 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p> <p>[전문개정 2012. 8.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거래당사자가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p> <p>2. 제3자는 제1호에 따른 통보 요청 시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3.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가. 소비자가 제2호에 따른 고지를 받고도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p> <p>나. 제3자가 제2호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 한 후 3영업일이 지났을 때</p> <p>4.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 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4조의4(공제조합의 인가 등) 법 제24조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p>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 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p> <p>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협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p>	제28조의5(조사반의 구성 등) <p>① 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한국 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p>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등) <p>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p> <p>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1. 목적 2. 사용 용도 3. 제출 또는 공유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사실 등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1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평가·인증 사업자의 명칭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3. 평가·인증 범위4. 평가·인증 업무 개시일5.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람·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장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2조(보고의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권고를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p>		
<p>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p> <p>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p> <p>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3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p>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 2. 대금의 환급 거절 및 자연의 경우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조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환급 조치 3. 재화등의 교환을 거절한 경우 교환 조치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4.〉</p> <p>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12. 4.〉</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p> <p>2. 통신판매중개자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p> <p>3. 전자케시판서비스 제공자 : 전자케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케시판 게시물의 차단</p> <p>[본조신설 2016. 9. 29.]</p> <p>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 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케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업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업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p> <p>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p> <p>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p> <p>3. 전자케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케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케시판 게시물의 차단</p> <p>[본조신설 2016. 9. 29.]</p> <p>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1. 한국소비자원</p> <p>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p> <p>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p> <p>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p> <p>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p> <p>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p> <p>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 업자의 명칭</p> <p>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 9. 29.]</p> <p>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p>	
<p>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시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p>	<p>제35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p>[전문개정 2012. 8. 13.]</p>	
	<p>제36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p>	
<p>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⑤ 삭제<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6장 보칙<개정 2012.2.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5. 설립 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17.]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p> <p>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p> <p>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6. 12.></p> <p>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p> <p>[전문개정 2012. 2. 17.]</p>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p>[전문개정 2012. 2. 17.]</p>		
제41조 삭제 <2016. 3. 29.>		
<p>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p>[전문개정 2012. 2. 17.]</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p> <p>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p> <p>[전문개정 2012. 2. 17.]</p>		
<p>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 3. 22.]</p>		
<p>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3. 29.〉</p> <p>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p> <p>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p> <p>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p>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p> <p>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p> <p>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 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p> <p>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p>	<p>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 9. 29., 2018. 12. 4.〉</p> <p>[전문개정 2012. 8. 13.]</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3호, 2019. 1. 8., 일부개정]
<p>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 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p> <p>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8. 삭제<(2018. 6. 12.)></p> <p>9. 삭제<(2018. 6. 12.)></p> <p>10. 삭제<(2018. 6. 12.)></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p> <p>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 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p> <p>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18. 6. 12.></p> <p>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 6. 12.></p> <p>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p>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28.]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발 행 일 2020년 5월
발 행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편집위원장 사이버조사단장 김현선
편집위원 심진봉, 이수화, 유범열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www.mfds.go.kr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



